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747

2018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문 나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of Shareholders' Meeting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문 나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재 형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문 나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나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서성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권상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재형 (인)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Ⅳ ····· vi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주주총회 운영현황과 전자화 ····· 4

제1절 우리나라 주주총회 운영현황과 기업환경의 변화 ····· 4

Ⅰ. 주주총회의 개최현황 ····· 4

Ⅱ. 기업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 ····· 6

1. 경제의 글로벌화 ····· 6

2. 경제의 디지털화 ····· 6

Ⅲ. 기업의 내부적 환경의 변화 ····· 7

1. 가족중심의 소유경영체제 ····· 7

2. 기업관의 변화 ····· 8

제2절 주주총회 전자화 현황 ····· 8

Ⅰ. 주주총회 전자화의 개념 ····· 8

Ⅱ. 주주총회 전자화의 기능 ····· 9

1. 주주의 참여확대 ····· 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주주 민주주의 실현 ····· 11
3. 녹생성장에의 기여 ····· 11
Ⅲ. 주주총회 전자화의 단계 및 특징 ····· 12
1. 소집절차의 전자화 ····· 12
2.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 13
3. 전자주주총회 ····· 15
제3절 전자화의 한계 및 검토 ····· 16
Ⅰ. 운영상의 한계 ····· 16
Ⅱ. 예측가능성의 저하 ····· 16
Ⅲ. 통신상의 장애 ····· 17
Ⅵ. 소결 ····· 17

제3장 전자투표제도 ····· 19
제1절 전자투표제도의 행사 절차 ····· 19
Ⅰ. 전자투표제도의 채택 ····· 19
1. 이사회 결의 ····· 19
2. 전자투표관리기관에의 위탁 ····· 19
Ⅱ. 전자투표제도의 통지·공고 ····· 21
1.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 기재사항 ····· 21
2. 참고자료의 제공 등 ····· 22
Ⅲ. 전자투표의 행사 ····· 22
1.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의결권의 일부분할행사 ····· 24
3. 의결권의 대리행사 ····· 24
Ⅳ. 기록의 열람 및 보관 등 ····· 26
1. 전자투표결과의 관리 ····· 26
2. 기록의 열람 및 보관 등 ····· 26
제2절 우리나라 전자투표제도의 현황 ····· 27
Ⅰ. 전자투표제도의 이용현황 ····· 27
Ⅱ. 전자투표제도의 저해요인 ····· 27
Ⅲ.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 ····· 29
1. 주주총회 정족수 요건 ····· 29
2. 섀도보팅 폐지와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 30
3. 공정성 및 안정성의 확보 ····· 32
제3절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해외 입법례 ····· 33
Ⅰ. 미국 ····· 33
1. 전자투표제도의 법률적 내용 ····· 33
2. 전자투표제도의 운용 ····· 35
Ⅱ. 일본 ····· 35
1. 전자투표제도의 법률적 내용 ····· 35
2. 전자투표제도의 운용 ····· 37
Ⅲ. 대만 ····· 38
1. 전자투표제도의 법률적 내용 ····· 38
2. 전자투표제도의 운용 ····· 3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우리나라 전자투표제도와의 비교 ·····39

제4장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42

제1절 의무화 논의의 배경과 내용 ·····42

Ⅰ. 논의 배경 ·····42

1. 섀도보팅의 폐지 ·····42

2. 기업지배구조 개선 ·····43

Ⅱ. 의무화의 효과 ·····44

1. 주주총회 활성화 ·····44

2. 국제 경쟁력 확보 ·····45

3. 의사정족수의 확보와 회사의 비용절감 ····· 46

Ⅲ.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검토 ·····46

1. 반(反) 기업민주주의 ·····47

2. 주주총회의 형식화 문제해결 부족 ·····47

3. 주주총회 의결의 질적저하 초래 ·····49

4. 주주의 의결권행사 제약 ·····49

5. 기업의 경제적 비용과 시간의 이중 부담 ·····50

제2절.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구현방법 ·····50

Ⅰ. 모든 회사에 대하여 의무규정을 두는 방법 ·····51

Ⅱ. 일정한 회사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방법 ·····51

Ⅲ. 주주의 전자투표청구권 인정 ·····53

Ⅳ. 간접적 의무화 구현 방법 ·····5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55
Ⅰ. 전자투표제도의 행사요건 ·····56
1. 이사회의 포괄적 결의 ·····56
2. 정관의 규정 ·····57
3.주주와 회사의 동의 ·····58
Ⅱ. 주주의 본인확인 ·····59
Ⅲ. 의결권의 철회 및 변경 ·····60
Ⅳ. 수정동의 ·····62
Ⅴ. 의결권 행사기한 ·····63
Ⅵ. 전자시스템 결함의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 ·····64

제5장 결 론 ·····66

참고문헌 ·····6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표1. 주주총회 지역별 개최지 현황
표2. 주주총회 개최 시각 현황
표3. 회사의 전자투표 계약현황
표4.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의결권 확보수단
표5. 섀도보팅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of Shareholders' Meeting

Moon, na-young
Advisor : prof. Kim, Jae-Hyeong,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rapid spread of the Internet, companies must adapt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shareholders can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asily in response to the high information age. Compared to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IT technology in Korea, the IT generaliz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as slow because there was no legal or institutional maintenance to use the technology properly. Finally, in 2010, we revised the Commercial Law to promote the electronicization of shareholders'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considered to be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means of electronic me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starting from the notice of the convening at the stage of the electroniciz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considering its necessity and function, but there are still questions about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this context,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s considered as one of the solutions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hareholders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in order to enforc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lectronicization of the voting rights. In particular, more detailed regulations are required for matters that may have problems with shareholder equity, such as withdrawal or change of voting rights, or that may affect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Despite the controversy, the fact that mandatory debate is being discussed means that there is a high level of concern abou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Although our commercial law was expected to have an effective change in the status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by introduc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the use of the system was poor due to the corporate shareholder participation avoidance phenomenon. It is only hopeless hope that the shareholders' meeting will fulfill its function in this reality. Therefore, in order for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to properly control and supervise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t is necessary to make electronic voting system mandatory and guarantee shareholder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전자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내부적·외부적 환경의 변화는 회사의 기업경영방식 등에 변화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회사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인터넷 등 전자화 된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서, 주주총회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인터넷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상법이 기업의 유지·발전을 이념으로 하여 '살아있는 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1)]

우리나라는 IT기술의 보급과 활용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지만 기업경영의 전자화를 위한 각종 규정의 시행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상당히 느린 편이다.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만큼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그 중에서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총회 전자화의 실질적 첫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전자투표제도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전자주주총회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서 먼저 이를 위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가 전자화 되어있어야 하고, 주주명부 등 회사의 각종 장부의 공시에 있어서도 전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법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가 도입되면서 주주의 권리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특히 주주총회야말로 투자자로서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들이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기능을[2)] 가장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기

1) 신현윤.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 「商事判例硏究(제30집 제3권)」 (2017. 9.), 38면.

2) 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를 지배한다는 기본적 이념을 소위 '주주주권론'이라 하며, 현대 회사법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小坂重吉, "株主總會運營の今日的課題-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との關聯において-", 「改正會社法の基本問題」, 商事法務(2003), 7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현장의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이다. 때문에 형해화 된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상당부분에 전자화를 도입하였다.[3] 비록 이러한 전자화가 주주총회의 형해화의 모든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는 없겠지만, 주주와 회사가 가지는 경영정보의 차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무관심과 그로 인한 주주총회의 참석률의 저조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전자투표제도는 그 필요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으나 아직 입법 및 해석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으며 기업들의 외면으로 전자투표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해법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 가운데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2010년 8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인터넷기반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여서 전자투표에 대한 관심이 부족 하고 섀도보팅 등 저해요인들 때문에 이를 채택하는 회사가 적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전자투표제도의 장점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한 방식과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의무화를 하게 되는 경우 먼저 정비되어야할 전자투표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논문에서는 주주총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전자화 즉, 전자투표제도의 우리나라의 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의무화라는 강제적 수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2009년 개정상법은 소집통지의 전자화,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기업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주총회 전자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연구해본다.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보면 1단계 소집통지 및 공고, 2단계 의결권의 행사, 3단계는 전자주주총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 실질적인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완전한 의미의 전자주주총회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집통지 및 공고와 의결권의 행사 단계까지만 전자화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가져오는 효과와 전자화의 한계점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앞의 장에서 정의한 의결권의 전자화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 전자투표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요인과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 시킬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적 의결권 행사의 요건과 전자적 행사절차를 살펴보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해외 입법례를 비교하여 검토해본다.

제4장에서는 섀도보팅의 폐지 등 관련제도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제시면서, 그 의무화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본다. 만약 직접적으로 의무화 하게 된다면, 그 범위는 모든회사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누어 회사의 규모나 주주수 등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무화를 위해서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전자투표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입법적 미비로 인한 법률의 해석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가 주주총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 하고자 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추세나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 비해 더디게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선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무화는 결론적으로 주주총회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며 결론에 가늠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주주총회 운영현황과 전자화

제1절 우리나라 주주총회 운영현황과 기업환경의 변화

Ⅰ. 주주총회의 개최현황

주주총회가 형식화 되어가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날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주식분산이 고도화되어 회사의 경영보다 단기적인 투자수익과 배당이익만을 노리는 주주들이 많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4]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식의 분산은 잘 되고 있지만 반면 그만큼 개별 주주의 보유비율은 작아지게 되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들게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5] 따라서 주주들은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에 회의적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 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3월 31일까지 12월 결산 상장법인 2,070사의 정기주총회가 마무리되었다. 이중 923사(44.8%)에 달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3월 24일(금)에 열려 사상최대 규모의 주총의 날로 기록 되었다. 이른바 슈퍼주총데이(super shareholders meeting days)이다.[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3월의 셋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법정사항 또는 기업들의 담합이라기 보다는 결산기 이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상장사들은 대부분 12월을 결산기로 채택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기재하여야 하는(자본시장법 159조 제2항) 회사의 입장에서는 3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개최일 뿐만

4) 최완진, "주주총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자화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7호(2017.1.), 50면.
5) 이세영, "株主總會의 電子化에 관한 法的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6.), 10면.
6) 한국예탁결제원, "3월 정기주총 현황", www.ksd.or.kr (2017. 10. 10 방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니라 개최지, 개최시각에서도 나타난다. 즉, 최근 5개년간의 분포를 보면, 개최지는 서울(3,760회, 40.7%)과 경기(2,509회, 27.1%)에, 개최 시각은 09:00와 10:00(8,118회, 87.8%)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 주주총회 지역별 개최지 현황[7)]

(단위 : 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비율
서울	683	698	737	802	842	3,760	40.7
경기	454	478	487	532	558	2,509	27.1
경남	80	83	86	87	86	422	4.6
충청	79	84	82	86	95	426	4.6
나머지 13개 광역 · 특별자치단체 (생략)							
합계	1,666	1,740	1,820	1,965	2,058	9,249	100.0

[표 2] 주주총회 개최 시각 현황[8)]

(단위 : 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비율
08:00	57	61	67	71	75	331	3.6
09:00	862	923	980	1,076	1,150	4,991	54.0
10:00	612	607	619	648	641	3,127	33.8
11:00	101	110	109	120	131	571	6.2
기타	34	39	45	50	61	229	2.5
합계	1,666	1,740	1,820	1,965	2,058	9,249	100.0

7) 한국예탁결제원,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정기주주 총회 현황분석"(2017), www.ksd.or.kr
8) 한국예탁결제원,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정기주주 총회 현황분석"(2017), www.ksd.or.k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와 같이 주주총회의 개최일, 개최지 등의 집중화는 주주들에게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작용하여 특히, 복수의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참석을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1991년부터 섀도보팅[9]을 도입하여 활용하게 된 것이다.

Ⅱ. 기업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

1. 경제의 글로벌화

1994년에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계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기업 간의 경쟁은 더 이상 국내시장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로 확대된 시장만큼 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 경쟁력이 필요해졌다. 또한 시장개방과 함께 FTA협정 등으로 국가 간의 물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다국적기업 등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투자나 통상에 관한 분야에서도 국가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10].

2. 경제의 디지털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의 네트워크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면서 오늘날 세계경제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즉,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거래패턴을 변화시켰고, 거래의 시간적·공간적 장애를 점차 극복시키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시장구조에서는 효율성과 혁신 및 지식기반기술이 강조되고 시장의 생성과 점유율이 빠르게 변화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SNS나 인간의 사고를 관찰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혁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는 급격히 재편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다. 지금까지는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제품을 빠르게 모방하거나 개량하는 형식으로 성장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업경쟁력을 갖추기

9) 한국예탁결제원, '1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현황', 3면.
10) 신현윤,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 「商事判例硏究(제30집 제3권)」(2017), 5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해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전환기로 삼아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여 선두에 나서야 하는 입장에 직면하게 되었다.[11)]

Ⅲ. 기업의 내부적 환경의 변화

1. 가족중심의 소유경영체제

국내기업들의 구조의 특징은 개인 지배주주가 존재하여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며, 제조기업의 약 85%, 상장기업의 68.3% 정도가 가족지배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12)]. 이는 사업 초기에 기업의 수익 극대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가족구성원들끼리 기업을 창업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문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관과 기업경영에 있어 운명공동체 의식이 결합하여 경영세습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13)]

한편으로 이러한 가족지배기업은 오늘날 집단적인 대기업의 모태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인적·물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가족구성원이 지배하는 기업과도 같은 구조와 운영형태를 보이지만, 가족구성원들의 지분율이나 경영참여 수준으로만 보았을 때는 실제로 가족지배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계열회사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가족지배기업과는 달리 소유지배의 괴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14)] 이는 급격한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부족한 자본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 즉, 상호출자, 순환출자, 피라미드출자 등의 방식을 취해 왔던 것에 연유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15)] 기업 그룹의 총

---

11) 신현윤, 앞의 논문, 6면.

12) 고윤성, 「가족지배기업의 경영성과 및 투자성과」한국경제연구원 (2016), 19면. 세법에서는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가족구성원의 주식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가족지배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13) 신현윤,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 「상사판례연구(제30집 제3권)」(2017), 9면.

14) 신현윤, 앞의 논문, 9면.

15) 독일의 경우도 19세기 중반 이후 후발공업화 과정에서 자본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기업이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등을 통해 여러 기업들을 소유·지배하는 방식으로 가공자본에 의해 형성된 기업집단이 출현하여 오늘날 Volkswagen, Daimler, Siemens, Deutsche Bank 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지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높은 지분율은 그룹의 총수가 적은 자본만으로도 기업집단의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그룹 총수가 있는 국내 40대 대기업집단의 경우는 대체로 내부지분율[16]은 57.3%로 지배주주 가족의 지분이 불과 4.1%이지만 계열회사지분율 50.6%, 기타 2.6%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가족지분이 평균 39%에 달하는 유럽의 기업들과 비교되는 점이기도 하다.[17]

2. 기업관의 변화

오늘날의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 하는 경제조직체이기 보다는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요구받아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경제조직체로 보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환경·복지 등 여러 분야에 기여하고, 성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결국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창출에 효과적일 수도 있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18]

제2절 주주총회 전자화 현황

Ⅰ.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

주주총회의 전자화란 보통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 및 의결권행사 등 주주총회 의사운영 전반에 걸쳐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9] 법률적 관점에서 전자화라는 개념은 전자적 방법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절차

과 같은 콘체른 형태로 발전하였다.

16) 이점, 내부지분율이란 기업의 전제 발행주식 지분 중 총수, 총수일가, 계열사 등 그룹 내부 관계자들이 보유한 지분비율을 말한다.

17) 박경서, “기업지배구조 연구의 고찰과 향후 국내관련 연구의 방향” 「경영학연구(제46권 제3호)」(2017), 648면 내지 649면.

18) 신현윤, 앞의 논문, 10면.

19)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19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서 전자적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그것이 법률적으로 유효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이다.[20]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두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주주총회 개최를 전제로 하면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와 의결권의 행사를 전자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주총회가 없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이하 '현장주주총회' 라고 한다)에서 소수의 주주만이 참여하여 화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소위 '가상주주총회[21]' 라고 말하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22] 그리고 이것을 전자적 기술이 도입되는 단계에 따라 또 한번 나눈다면 1단계 소집통지·공고, 2단계 의결권행사, 3단계 전자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다.[23] 입법에 있어서도 각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4]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현장주주총회를 필요로 하는 2단계의까지의 전자화만이 가능하고, 미국 델라웨어주의 경우에는 3단계인 가상주주총회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하고 있다.

Ⅱ.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기능

1. 주주의 참여확대

원칙적으로 주주는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시간적·지리적 제약과 주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은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총회의 개최일이 특정일에 집중되다 보니 다수회사에 투자한 주주의 경우 참석할 의사가 있음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5] 주주

---

20) 권종호, " 주주총회의 IT화" 「증권예탁(제41호)」(2002), 4면.
21) 홍복기,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제22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2003), 181면.
22) 허원준, "주주총회 전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2016), 24면.
23) 허원준, 위의 논문, 24면.
24)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외지만 외국의 경우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은 소집통지의 전자화와 2단계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그 후에 3단계 이상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이용되는 기술이 1단계와 2단계의 경우 그다지 차이가 없으나 3단계부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하여" 「비교사법(제11권 제4호)」 (2004), 17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총회 개최지 역시 정관에 주주총회 소집지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다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364조). 그룹계열 기업 대부분의 본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지역도 수도권 등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주주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주총회 참석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서 상법은 서면투표제도와 의결권의 대리행사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3, 제368조 제3항). 그러나 서면투표제도의 실시는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서면투표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기업에서 정관에 규정을 두어 실시하지 않으면 주주로서는 이를 활용할 근거가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관변경의 번거로움과 서면투표제를 실시하였을 때 생기는 업무의 번잡함과 비용부담 때문에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26] 또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주주와 대리인 간의 신임관계가 요구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실익이 없다면 주주는 잘 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하거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7]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전체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들의 의도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형식화 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28] 그러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준다면 주주의 참여가 확대되어 형해화 된 주주총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9]

---

25) 이와 같이 주주총회의 개최일이 특정일에 집중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투자인구 1인당 평균보유 종목수가 3종목임을 감안할 때 주주가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의 모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정찬형,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 (2004), 57면).

26) 2010. 4. 1. 기준 주권상장법인 정관 기재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면투표를 도입한 회사 비율이 12.2%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대다수의 회사들은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정관 기재유형”,「상장」 (2010), 43면).

27) 정찬형,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2004), 54면.

28)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하여” 「비교사법(제11권 제4호)」 (2004), 189면.

29) 이세영, “株主總會의 電子化에 관한 法的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주주 민주주의 실현

주주총회의 시·공간적 제약의 해소로 개인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활발해지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의도대로 의사결정 어려워지고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므로[30] 주주의 투표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견교환의 기회를 갖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루머로 인한 의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결국 주주총회가 전자화 된다는 것은 주주총회가 주주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31]

3. 녹생성장에의 기여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총회 전자화의 단계가 소집통지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부분만이 법제되어 있고 그 활용도마저 낮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드는 비용의 절감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활성화 된다면 각종 문서의 송부가 줄어들고 주주총회 개최비용, 주주의 참여비용 등이 절약되면서 녹색성장[32] 및 환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33]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앞서있는 미국의 경우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개최한 뒤로 주주총회에 소용되는 비용이 1/10로 줄어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34]

면.

30) 山田尙武, “會社運營の電子化”「ジュリスト」 第1206号(2001), 799면.

31) 이세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법적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면.

3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최근 녹색성장, 녹색법제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록 경제적 개념이지만 주주총회의 전자화도 전자문서의 사용, 주주총회 관련 비용의 절약 등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3) 이세영, 위의논문, 11면.

34) DanielAdam Birnhak, "OnlineShareholderMeetings", 29RutgersComputer&Tech.L.J.423,(2003), p.439~44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단계 및 특징

1. 소집절차의 전자화

가.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의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상법362조)이므로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에서는 통지와 공고가 기본이 된다. 소집통지는 이사회에서 정한 개최일시,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총회 회일 2주전까지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1항). 이 단계에서는 주주총회 개최예정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술적인 어려움은 적지만, 전자적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주주들의 보호를 위하여 전자적 소집통지를 도입하는 요건으로 주주 동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09년 상법 개정 시 동조 3항에 주주의 동의요건을 포함하였고, 상법 제289조 제3항에 전자공고를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35]

나. 소집절차의 전자화 현황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있어 우리 상법은 많은 부분에 전자적 방식을 규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시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1항), 상장 회사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소집통에 갈음한 공고를 전자공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을 두는 등 소집절차 부분에 있어서 주주총회 전자화를 위한 법률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한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 즉, 이메일에 의한 소집통지 방식은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상법상의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법 제316조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가 주주의

35) 이세영, 앞의 논문, 29면;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제1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5), 453 내지 45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없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를 동의한 주주가 많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기 위해 업무가 복잡해지고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36] 한편,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전자공고의 경우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방식에 '1% 초과 주주에게만 통지하고 1% 이하의 주주는 전자공시시스템 게재로 갈음함'에 응답한 회사가 164개사로 42.4%로 나타나 가장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37]

2.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가.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단계 의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를 통해 주주는 현장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위임하지 아니하고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의 장소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주주총회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비전업 투자자나 소액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상법 개정 시 제368조의4를 신설하여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도모하였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전자투표제도를 인정한다면 기존의 서면투표제도가 가지고 있는 소수주주의 및 외국인 주주들의 참여의 편리함은 그대로 가지면서도 서면투표제도와 달리 의사진행의 탄력적인 대응과 의결권행사의 완료시기를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될 때 까지 기술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8]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인해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있을 뿐 의결권행사의 철회·변경, 의결권 행사기한, 통신수단의 장애로 인한 총회결의의 하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 사실이다.[39]

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현황

---

36) 김순석, 「전자주주총회」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140면.
37) 한국상장사협의회, 「2016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2016), 24면.
38) 허원준, "주주총회 전자화 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6), 28면.
39) 이세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30면; 정경영·이세영,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후 주주총회의 변화에 관한 고찰"「성균관법학(제23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53 내지 35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09년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고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제공하였음에도 2015년 이전까지 전자투표제도를 사용한 기업의 수는 매우 적었다. 그 동안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예탁결제원이 기업의 요청에 의해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해주는 제도인 섀도보팅의 존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2013년 처음 섀도보팅의 폐지가 논란이 되었던 때와 비교하여 2015년 섀도보팅을 2년 유예하면서 그 조건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 후의 전자투표 채택률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표 3〕 회사의 전자투표 계약현황[40)]

(단위 : 사)

구분		2010~2014년	2015년	2016.3.31	합 계
전자투표	유가증권	27	127	83	237
	코스닥	25	279	189	493
	기 타	27	10	6	43
	합 계	79	416	278	773

위와 같은 발행회사의 전자투표 채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의한 전자투표 행사비율은 아주 미미하다. 2016년도의 전자투표 이용회사만 놓고 볼 때 이들 회사의 전자투표 행사비율은 행사주식 수 기준 1.44%, 행사주주 수 기준 0.22% 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율이 낮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액주주들의 참석자체가 저조했다는 점, 또 기업에 의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주주들의 전자투표 참여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투표제도가 범용성 있는 인프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있다.[41)]

40)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2016).
41)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제16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5), 18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전자주주총회

가. 전자주주총회 단계 의의

주주총회 자체가 전자화 되는 이 단계에서는 의결권의 행사가 전자적 방식에 의한다는 점에서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단계와 비슷하지만,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주주총회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면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자주주총회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장과 함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퇴장을 통제할 적절한 방법,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주주와 전자주주총회로 참석한 주주간의 공평성 확보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현장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이상 토론이나 의결의 중심은 현장주주총회에 있다고 해석된다.[42]

전자주주총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부터 폐회까지 모든 운영절차가 현장의 진행 없이 가상공간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와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간의 형평성은 문제되지 않으나 기존 현장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동일한 수준의 공평한 참여기회의 보장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43]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수준과 주주들의 전자적 기술의 사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세계화 흐름에 따라 전자주총회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므로 전자주주총회 완전한 도입을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44]

나.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현황

전자주주총회가 이루어진다면 주주 내지 대리인이 주주총회의 현장에 출석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플랫폼에 접속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아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주주총회 출석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자체'를 전자화 하는 것이다.[45]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모든

---

42) 이세영, 앞의논문, 30면; 정경영·이세영, 앞의 논문, 353~354면; 정경영, 앞의 논문, 104면.
43) 이세영, 앞의논문, 31면; 정경영·이세영, 앞의 논문, 354면; 정경영, 앞의 논문, 455~456면.
44) 이세영, 앞의논문, 32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IT강국으로서 인터넷 기초기술의 발달과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제화되어 있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권행사의 법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외국입법례 등 전자주주총회의 현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제3절 전자화의 한계 및 검토

Ⅰ. 운영상의 한계

주주총회 전자화를 위한 IT기술의 도입은 초기비용과 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전자화를 위한 제도들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무관심이 계속되어 비대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특성을 악용하거나 현장에 출석하지 않는 주주들로부터 경영진 또는 대주주들이 의결권을 매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46] 반대로 주주들이 주주총회가 진행될 때 집단적으로 로그오프 하여 주주총회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주주들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47] 또한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는 편리해졌지만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루머의 유포가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운영상의 한계로 지적된다.

Ⅱ. 예측가능성의 저하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가상공간에서의 주주총회 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현장주주총회에 비하여 회의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총회 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처가 늦어질 우려가 있고 의결권행사만 전자화 하는 단계의 경우

45) 鮎瀨典夫, “株主總會をめぐるこれまでの論議と電子株主總會” 「電子株主總會の研究」 弘文堂 (2003), 2頁.
46) Douglas R. Cole, “E-Proxies for Sale? Corporate Vote-Buying in the Internet Age”,76 Wash. L. Rev.79 (2001), p.3.
47) 岩村充・神田秀樹 編,「電子株主総会の研究」弘文堂 (2003), 104 내지 105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는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비하여 주주의 참여율이 하락하고 주주들이 총회 운영에 무관심해 질 수 있다. 또한 위임장을 제출했던 주주가 총회 당일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의 내용과 다른 투표를 하거나, 의결권의 행사 시점을 가능하면 늦추려고 하여 회사의 투표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경영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48]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영자가 주주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수 있으므로 되고 주주총회의 회의체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의 저하가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49]

Ⅲ. 통신상의 장애

주주총회 운영상의 문제 외에도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기술적인 문제 또한 주주총회를 전자화 하는 데에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상 장애로 인한 우려는 비단 주주총회의 전자화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발달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또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이미 주주총회 상당부분에 IT기술이 도입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도입을 위하여 구축한 인프라는 향후 다른 업무에 활용하여 그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전자화는 필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추어 법제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50]

Ⅳ. 소결

주주총회에 IT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회사는 관련서류들의 송부비용의 절감, 의결정족수의 확보 및 기업경영의 투명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참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회사경영에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주주권의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주에게

48) 池田順一, “アメリカにおける株主總會の電子化について” 「電子株主總會の研究」弘文當 (2003), 36면.
49) 이세영, 앞의 논문, 12면.
50) 이세영, 위의 논문, 13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해외 투자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자본조달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51)]

이런 추세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소집통지와 의결권행사의 부분까지 입법화 되기에 이르렀으나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부분은 현재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의결권에 관한 전자화도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전자주주총회를 주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에 관한 논의까지 하지 않음은 발전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51) 이세영, 위의 논문, 13~1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전자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란 주주나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52] 이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여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게 해주고, 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진행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다. 그러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자 총회의 개최목적인 것에 비하여 주주총회 전자화 단계에 있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전자투표제도의 구조와 운영현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제1절 전자투표제도의 행사 절차

Ⅰ. 전자투표제도의 채택

1. 이사회 결의

전자투표제도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채택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여부를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닌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게 도입되었다.

2. 전자투표관리기관에의 위탁

회사는 전자투표를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관리

52) 정경영,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2004), 99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관을 지정하여 의결권 행사 절차의 전반에 걸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상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이것은 선택적 규정으로 보이나, 전자투표의 인프라 구축 등 전자투표를 이용하려는 대부분의 회사는 전자투표관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투표관리기관의 기술력과 인프라, 공신력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지정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년 8월부터 전자투표에 관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령이 없을 경우 혼란방지를 위해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을 해석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전자투표 관리업무는 관계법령,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또는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된다(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7조). 그러므로 전자투표를 채택하려는 회사는 전자투표에 관한 인프라를 갖춘 전자투표관리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자투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전자투표관리계약의 체결

먼저 전자투표를 채택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전자투표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자투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회사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전자투표관리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규정 제8조). 전자투표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위해 예탁결제원에서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를 받게 된다.

다. 전자투표 이용신청

한국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의 관련 정보를 전자투표시스템에 입력하여 회사가 전자투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회사는 부여받은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위탁회사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일 3주전까지 전자투표시스템에 전자투표이용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규정 제9조 제1항), 신청 이후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의 의안,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공고문, 의결권 참고자료 등을 등록해야한다(규정 제10조 제1항). 이후는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53]에 따라 자본금과 주주 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주주들의 전자투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Ⅱ. 전자투표제도의 통지·공고

1.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 기재사항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투표를 채택 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

53)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위탁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수에 따라 '가. 표준수수료'에 '나.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수수료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 다만, 금융투자업에 따른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제외), 선박투자회사 등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30만원,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15만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별표).

가. 표준수수료

자본금	표준수수료
5천억원 이상	500만원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450만원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400만원
3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350만원
2백억원 이상 3백억원 미만	300만원
1백억원 이상 2백억원 미만	250만원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	200만원
50억원 미만	100만원

나. 적용률

주주수	적용률
1만명 이상	1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90%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	80%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70%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	60%
1천명 미만	5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2항).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에 주주가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투표기간 등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 처리방법 및 그 밖에 기술적인 사항들을 기재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및 규정 제10조 제2항).

2. 참고자료의 제공 등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의안의 요령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54] 회사는 주주에게 전자투표양식과 참고자료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3항 후단).

Ⅲ. 전자투표의 행사

1.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한 후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할 수 있는데(상법 제368조의2 제1항), 3일의 기간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회사의 총회 사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이다.[55] 이러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다수의 실질주주로부터 주식을 위탁받은 명의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각 실질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54) 정경영, 「상법학강의(개정판)」박영사 (2009), 248면.
5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18판결; 판례는 "3일의 기간의 부여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 회일의 3일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주주가 3일 전에 통지하지 못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적법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실익이 있다.[56] 만약 일부 주식에는 찬성, 나머지 주식에는 반대하는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를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금지시킨다면 실질적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것은 의결권행사의 편리성과 주주총회 활성화라는 전자투표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57]

다만, 전자투표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가 현행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술적 문제일 뿐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투표관리기관도 미리 알 필요가 있으므로 위탁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정보를 전자투표관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불통일 행사를 통지하였다면 현행법상 유효한 행사가 될 것이다.[58]

전자투표관리계약을 체결 할 때 주주의 의결권불통일 행사에 관한 정보를 위탁회사가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으나, 주주의 불통일 행사의 통지를 수령하는 권한을 관리기관이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관한 회사의 통지수령권한은 단순히 주주의 의결권불통일행사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외부기관에 대행시키더라도 그 성격상 회사에 전달되도록 하면 무방하고, 오히려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직접 불통일 행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전자투표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회사가 가지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거부권(상법 제368조의2 제2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권한에 관하여 회사와 전자투표관리기관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법의 강행법적 성질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불통일행사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권한을 회사가 아닌 외부기관에 위임할 수 없을 것이다.[59] 그러나 주주의 전자투표의 행사가 이러한 위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와 관리기관의 권한에 관한 문제일 뿐 의결권행사 자체의 효력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

56) 정경영, 앞의 논문, 474면.
57) 일본에서는 전자투표 웹사이트에 불통일행사를 하는 주주를 위한 별도의 전용 사이트를 마련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다. 中西敏和, “株主總會のIT化と實務の對應” 「商事法務(第1635号)」(2002), 32면.
58) 정경영, “전자투표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증권예탁」(2010), 16~17면.
59) 정경영, 위의 논문, 17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의결권의 일부분할행사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만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현행 상법은 의결권의 일부행사에 관하여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권 행사 자유의 원칙에 의한다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기권과 비슷하지만 정족수를 계산할 때 일부분할 행사는 주주가 행사한 주식만 출석주주로 계산되는 것에 비해 기권은 모든 주식이 출석주주에 포함되는 것에서 구별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출석주주로 의사표시를 하고서 일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의결권의 일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찬성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반대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시에 거쳐야 하는 회사에 대한 통지 및 승낙이 없이 한 의결권의 분할행사는 부적법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의결권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일부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법으로 찬성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찬성하였다면 다르게 볼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의결권의 일부행사에 대한 문제로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에 대하여 그 행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자투표를 하였다고 하여 주주총회의 출석이나, 의결권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주주가 굳이 이렇게 행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60]

3.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법 368조 제3항에 따르면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대리인도 위임장을 서면

60) 정경영, 위의 논문, 17~1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전자투표가 비대면절차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위임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 시행령에서는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의 본인확인절차는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인전자서명은 본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리인의 전자투표를 불가능하다. 만약 대리인에게 공인전자서명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투표를 하게 했다면 이러한 전자투표를 유효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의한 유효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의결권 행사의 대행 즉, 대리의 일종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61]

다만, 공개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전자문서에 의한 위임장 양식을 송부하면, 이를 기재한 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송부하고, 이 전자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은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대리권을 증명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제3호 참조).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송신함으로써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2]

「전자거래기본법」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거래에 적용되므로(동법 제3조) 전자거래에 관련된 전자문서(동법 제4조)의 경우에만 서면에 대한 대체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관련성이 없는 전자서면을 문서에 대체하여 보는 것은 문서의 현시성(顯示性)과 같은 기능을 무시하고 전자서면의 기능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대리권의 위임방법인 서면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3] 그리고 한편으로 상법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조문에는 특별히 "전자문서"를 규정하면서 대리권의 위임방법에만 서면으로 남겨둔 것은 입법적 불비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법 제368조 제3항 후단에 대리권의 증명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하여 의결권의 전자적 위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 대리권의 증명서류

61) 정경영, 위의논문, 18면.
62)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제28권 제3호)」(2009), 399면.
63) 정경영,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 (2004), 131~132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대리인이 주주총회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64]

Ⅳ. 기록의 열람 및 보관 등

1. 전자투표결과의 관리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행사하는 기간 동안 회사는 주주명부 정정신청, 의결권불통일행사 통지내역 및 주주총회 의사표시내역 등을 전달받고, 실시간으로 전자투표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규정 제17조). 전자투표가 완료되면 해당 내역과 현장주주총회의 내역을 함께 집계하고, 주주총회가 종료 된 후에는 그 결과를 전자투표시스템에 기재하여 해당 주주총회의 내역을 주주들이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규정 제18조).

2. 기록의 열람 및 보관 등

주주가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현장주주총회에서와 달리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전자적 기록의 열람 등이 중요시 된다. 회사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기록을 주주총회가 종료할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고,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5항).

한편 전자투표에 의한 결과가 먼저 공표될 경우 현장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가 완료될 시점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65]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 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상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또한 주주총회를 위해 선임된 검사인은 이사가 제출한 서루와 감사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해 선임되는 임시기관인데(상법 제366

64) 이세영, 앞의 논문, 169면.
65) 정경영, "전자투표제도의 시행과 기업의 준비과제: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장협연구(제57호)」(2008), 18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 제3항 등), 이는 회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가진 주주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 법원에 청구하여 선임된 자이다(상법 제367조 제2항). 이러한 검사인은 결의방법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전자투표의 결과에 대한 조사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절 우리나라 전자투표제도의 현황

Ⅰ.전자투표제도의 이용현황

한국예탁결제원이 2010년 9월 19일부터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까지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제도계약을 채택한 기업은 누적 79개사로 매우 낮은 계약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66]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더욱이 케이비자산운용 등 6개의 자산운용사에서는 28사를 대상으로 총 650만주를 전자투표로 행사하게하여(평균 행사율 4.96%) 자산운용사가 참여한 기업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행사율을 보였다.

Ⅱ. 전자투표제도의 저해요인

2010년 8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자투표제도는 저조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67] 그 이유

66)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 (2016) 참조.

67) 앞으로 전자투표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의결권행사 등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2009년 상장회사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대상기업 총 342개사 중에서 '예정없음'이 197개사(57.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로는 인력·비용 등이 더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라는 응답이 73개사(3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주주총회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9개사(32.2%), 경영진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이 37개사(20.2%)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상장회사 주주총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회사가 정족수를 확보해야 할 때 선호하는 제도가 서면투표나 전자투표가 아닌 위임장권유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결의 예측은 경영진에게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68]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이나 예측과 반대되는 투표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반하여 위임장권유는 회사가 권유자가 되어 주주들의 의결권의 행사를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된다.[69]

[표 4]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의결권 확보수단[70]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유가		코스닥		계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서면투표제도	40	10.1	41	8.1	81	9.0
전자투표제도	61	15.4	105	20.8	166	18.5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위임장 확보)	268	67.8	331	65.6	599	66.6
보유주식 많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요청	240	60.8	339	67.3	579	64.4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행사 요청	202	51.1	178	35.3	380	42.3
기타	52	13.1	72	14.3	124	13.8
계(응답회사 수)	395	100.0	504	100.0	899	100.0
무응답	17		6		23	

2014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922개사가 이에 대해 응답하였다. 동 설문결과에 따르면, 섀도보팅의 폐지 이후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수단으로 자발적으로 노력할 대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라는 응답이 599개 회사, 6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유주식이 많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백서」181면). 회사의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가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조사 자료이다.

68) 池田順一, "アメリカにおける株主總會の電子化について" 「電子株主總會の研究」弘文當(2003), 36면.

69) 장영수,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연구" 「증권법연구(제15권 제1호)」(2014), 175면.

70) 최준선, 「섀도우보팅제 폐지가 상장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4), 31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579개 회사, 64.4% 및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380개 회사, 4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서면투표’는 81개 회사로 9.0%, ‘전자투표’는166개 회사, 18.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71]

회사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자투표제도의 실효성 및 법률적인 미비로 인한 수정의안 등의 처리방법의 부재, 전자투표제도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초기비용의 부담 등이 있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72]

Ⅲ.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주주총회 정족수 요건

주주총회 전자화에의 유도에 비해 그 도입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는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정족수가 너무 완화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73]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전체 구성원 중 일정 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그 출석한 주주에서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의결정족수) 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분산이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의 확보가 어려워, 1995년 상법 개정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서 의사정족수를 폐지하면서, 일부 소수주주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수 이상의 찬성요건을 규정하였다.[74] 따라서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는 출

71)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환성화 방안” 「企業法硏究(제28권 제4호)」 206 내지 207면.
72)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대기업들은 2010년 결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유보하였다.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우려에서이다. 또한 강원랜드와 한국전력 등 대다수 공기업들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 없이 개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데 부정적이다(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도 전자투표미룬 이유는?”, “전자투표 공기업마저 외면...수십억 낭비” (2011. 3. 20.) 참조).
73) 권종호, “주주총회 IT화,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하여”「비교사법(제11권 제4호)」 (2004), 185면.
74) 최준선, 「회사법(제5판)」삼영사 (2010), 347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석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상법 제434조)의 찬성이 요구된다.

본래 상장회사는 주주가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주주총회 정족수의 요건이 높게 규정되어 있을수록 전자화에로의 유인이 쉬울 것이다.[75] 이러한 이유로 의사정족수를 부활하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는데[76]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위해 이미 폐지한 의사정족수의 부활은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게 주주총회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되어 섀도보팅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의사정족수가 부활하더라도 회사는 서면투표나 의결권대리행사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에 입법 목적인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77]

2. 섀도보팅 폐지와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우리나라 주주의 구성은 상당부분 개인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대부분은 주주총회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한 제도로 형식상 주주인 예탁결제원에서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섀도보팅을 도입하였다.[78] 이러한 섀도보팅제도는 과도기적 제도로서 그 취지에 맞게 주주총회 불성립의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보조적으로 이용되었어야 하나, 현재 주주총회에서의 운영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상법은 1995년 의사정족수를 폐지하고, 1999년 서면투표제도의 도입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회사의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발행회사로서는 손쉽고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섀도보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79] 따라서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제도 등의 활성화와 섀도보팅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80]

---

75) 김순석, 「전자주주총회」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45면.
76) 김순석, 위의 책, 46면.
77) 이세영, 앞의 논문, 202면.
78) 박석희, “경영평가가 공기업 조직역량에 미친 효과분석”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106면.
79)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shadow voting을 요청한 회사의 비율은 도입초기인 1993년 34%, 1997년 31.3%, 2009년 32%로 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큰 변동이 없다.
80) 동 견해에서는 회사의 자치에 속하는 주주총회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합리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 섀도보팅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81]

구분	기관	주장내용
찬성	정부 금융위	경영진의 손쉬운 의결정족수 확보수단으로 이용되어 주주의 권리행사를 저해
	시민단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섀도보팅 폐지 바람직. 주주총회의 요식행위화 막아야 함
	법조계	폐지 초기에는 불편할지 모르나 소수주주 의결권이 강화되고 기업투명성이 제고될 것
	학계	소액주주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대주주 중심의 주주총회운영심화로 주주총회의 무력화 심화
반대	발행회사 설문조사	889개 상장회사 중 77%인 696개사가 "섀도보팅 폐지되면 주총의결 어려울 것" 답변
	경제계	현실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상법상의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불가능
	법조계	섀도보팅 제도의 폐지 이후 기업의 일사적 운영이 가능해야...보통결의나 감사선임 어려워질 것
	학계	기업의 주주총회 성립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경영권이 펀드 등에 종속될 우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주주들로부터 총회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주어 섀도보팅 존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의 주주가 반드시 투표 할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섀도보팅의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82] 이에 관하여 근래에는 섀도보팅을 이용하는 회사는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되고있다.[83] 다만, 우선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여 주주들의 참석기회를 확대한 후에도 결의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섀도보팅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

하기 어렵고, 그 필요성에 비해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기업경영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박철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의결권 행사제도" 한국상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2010), 114면.).

81) 이해성, "섀도우보팅(Shadow Voting)과 企業透明性에 關한 硏究; 利益의 質과 租稅回避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5), 10면 참조.

82) 이세영, 앞의 논문, 199면.

83) 20대 국회의 개정 상법안에 대한 지난 3월 2차 '4+4' 회동에서는1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대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이혁, "새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상사법연구 제30집 제3권 2017.9.30. 발표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투표제도의 의무적 도입은 회사의 입장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추가적 부담이 되므로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만은 않다.[84]

그러나 섀도보팅제도는 주주총회 불성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이고 서면투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존재가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회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손쉬운 의결권 확보수단으로 작용하여 회사가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섀도보팅을 계속 유지한다면 회사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소극적이게 되고,[85]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 될 것이다. 특히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되면(상법 제356조의2) 투자자가 전자등록부 및 주주명부를 근거로 법률상 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예탁결제원 및 중개기관의 개입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섀도보팅의 폐지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86]

3. 공정성 및 안정성의 확보

공정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전자투표제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전자화의 전반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각종 금융권의 개인정보유출 사건도 전자화로 인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자투표제도의 경우 회사가 전자투표의 운영을 전자투표관리기관에 위임하게 되면 전자투표관리기관은 주주의 주식수,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내역과 기업의 각종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전자투표결과의 처리도 취급하게 되므로 해킹 또는 시스템상 하자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물론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선정기준이나 안전성 요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그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내부적인 감독도 필요하다.[87] 그리고 그러한 법제개선과 함께 업무담당자들의 철저한 관리도 요구된다.[88]

---

84) 조문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8086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85) 김순석, 「전자주주총회」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168면.
86) 이세영, 앞의 논문, 200면.
87) 이세영, 위의 논문, 202면.
88) 2011년 4월 12일 농협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전제 또는 일부 서비스 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해외 입법례

Ⅰ. 미국

1. 전자투표제도의 법률적 내용

미국은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다만,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개별 주마다 그 입법내용이 다르므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의결권의 전자적 방식에 대한 내용을 파악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개정모범사업회사법[89]에서는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대리인의 선임통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자체에 관한 규정은 아직 두고 있지 않다.[90] 그러나 많은 개별 주에서는 주주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은 2000년 7월 개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주주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91] 델라

용이 마비된 사건에서도 서버 유지보수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인 한국IBM사의 한모씨가 2010년 9월 4일 한 커피숍에서 받은 웹하드 사이트 무료 다운로드 쿠폰으로 서버관리 업무에 쓰는 노트북에 영화를 내려받다가 컴퓨터가 감염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노트북은 북한 정찰총국이 심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범인들은 노트북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각종 악성프로그램을 심고 다음 공격 실행까지 7달 동안 최고위 관리자의 비밀번호 등 전산망 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를 빼냈고,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동아닷컴 2011. 5. 4. 기사참조).

89)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2010)은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제정한 모델로 다수의 주에서 채택하여 많은 주회사법에 반영되고 있다.

90) 김병태,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영산법률논총(제10권 제2호 통권 제18호)」(2013), 59면.

91) [Delaware Code Title 8 - Corporations] § 211. Meetings of stockholders.
(a)(1) 주주총회는 정관 · 부속정관에 규정된 델라웨어 주내 또는 밖의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 만일 장소가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주주총회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이사회가 이 조 또는 정관, 부속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어떤 특정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고 제 211 조 (a)(2) 에서 규정한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웨어주 회사법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등, 모름지기 주주총회 전자화의 완전한 단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1조 제1항(a)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또는 온라인상 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회사에 위임하고 있다. 즉,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적 원격통신수단'만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주주총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때 회사는 주주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① 원격통신수단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자가 주주 또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② 주주 또는 대리인이 주주총회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알고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투표 등 기타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기초 하에서 회사는 현장주주총회는 물론 원격통신수단만을 이용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도 있으며, 또는 의사회의 결의로 양자 방식을 병행한 주주총회의 개최도 할 수도 있다.[92]

주주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와는 별도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는 주주의 동의를 전제로 정관규정에 따라 전자적 송신방법에 의한 통지가 허용된다(델라웨어주 회사법 제 232 조 (a)).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주는 전자적 송신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고 원격통신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

92) [Delaware Code Title 8 - Corporations] § 211. Meetings of stockholders.
(a)(2) 만일 주주와 위임장소지인이 이사회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고 이사회가 채택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면, 주주총회에 물리적 출석을 하지 않은 주주 · 위임장 소지인은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a)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b) 만일 다음 사항이 갖추었다면, 주주총회가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되든 또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서만 개최되든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회사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주주 또는 위임장소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회사는 주주와 위임장소지인에게 주주총회의 진행상황을 동시에 읽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i) 만일 주주 또는 위임장소지인이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하고 기타의 결의를 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보존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주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법률은 그 위임의 증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위임의 형식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위임의 유효한 수단만을 열거하고 있다. 즉, 무선, 유선, 기타 전자적 송신의 수단에 의한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그러하다(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2조(c)).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전자적 송신의 수단에 의한 위임장에는 주주로부터의 수권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또한 사본, 팩시밀리 원격통신 등 기타 신뢰 가능한 복제물도 위임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2조(d)).

이러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의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규정은 미국의 다른 주에도 영향을 주어 이와 유사한 법제가 마련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리조나, 콜로라도, 위스콘신, 플로리다, 네바다, 미시건,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이 있다.

2. 전자투표제도의 운영

미국에서 전자투표제도는 대부분 Proxy Firm 과 ADP에서 운영하고 있다. Proxy Firm 은 위임장 권유업무를 주된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데, 부수적 업무로는 명의개서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며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DP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송부업무를 처리하는 IT회사로서 Proxy Firm 와 달리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에게만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전자투표제도 이용률은 2004년 기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회사가 1,900사로 전년에 비해 약 70%가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전자주주총회를 이용하는 회사도 생기고 있다.

Ⅱ. 일본

1. 전자투표제도의 법률적 내용

일본은 주주총회 등 회사운영의 전자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1년 11월 상법 및 상법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을 통하여 회사 관계서류와 주주총회의 운영에 전자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구현하였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사항은 ① 회사 관계서류 전자화, ② 회사와 주주간 통지 등의 전자화 ③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④ 결산 공고의 전자화 등으로 대별되고 동 개정내용은 200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상법과 유한회사법 등의 회사관련 법규를 통합하면서 대폭적인 개정을 가하여 지난 2005년 7월 26일에 새로이 단일 '회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

2005년 새로이 제정된 회사법에서도 기존의 상법상 전자투표제도는 그대로 계승되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일본 회사법에서도 전자투표제도의 채택 여부는 회사의 자율사항이므로 매 주주총회마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주주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서면투표제도의 대체적인 성질을 가질 뿐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완전한 의미의 전자주주총회와는 구별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서면투표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으며, 회사는 서면투표제도와 전자투표제도를 병용할 수 있다. 일본 회사법상 인정되는 서면투표제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298조 제2항, 일본 회사법시행규칙 제64조). 다만 특례법에 의하여 대규모회사에서 의결권 있는 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인 주식회사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서면투표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회사이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는 회사이건 전자투표제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모두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그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일본 회사법 제299조 제2항 1호), 이때 참고서류와 의결권행사 서면에 관한 양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302조 제1항). 다만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 관련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302조 제2항).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무권리자의 투표행위 또는 해킹 등에 대한 방지책으로 주주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서면투표 용지의 주주날인과 같이 주주개인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일본 전자서명인증법 제2조 제1항), 사전에 회사가 주주에게 할당한 등록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주주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 주주가 주주총회일 일주일전까지 전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투표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요청하면 회사는 즉시 해당 주주에게 의결권행사 서면과 참고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302조 제4항).

전자투표의 행사기한은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 까지로 한다. 회사가 서면투표제도와 전자투표제도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만일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중복되어 행사 되었을 때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도착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된 의결권의 전후를 판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회사는 미리 어느 한쪽의 방법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298조 제1항 5호 및 제299조 제4항).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도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다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전자투표에 의해 행사된 의결권도 현장주주총회에서 행사된 의결권과 같이 주주총회의 출석 주주수에 산입된다(일본 회사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전자투표에 관한 기록은 주주총회일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의 열람 및 등사에 제공되어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2. 전자투표제도의 운영

일본의 전자투표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명의개서대행회사와 ICJ가 전자투표업무를 이원화하여 수행하고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모든 주주에 대한 전자투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CJ는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특화된 전자투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전자투표제도는 현재 주주총회 운영비용의 절감과 의안결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612개사에서 도입하는 등 회사의 전자투표제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전자투표의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 중 48%에서 20%이상의 주식수를 전자투표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표적으로는 혼다, 도요다, 소니, 파나소닉, 닌텐도, NTT 도코모, 야후제팬, 등이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대만

1. 전자투표제도의 법률적 내용

대만 회사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행사 방법으로 서면투표제도와 전자투표제도를 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주총회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R.O.C.)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규정을 두어 강제적인 도입을 추진하였다.

과거에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경우에 일부 주주가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대만 회사법 제177-1조를 개정하여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2012년에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자본금 100억 대만달러 이상과 주주 10,000명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전자투표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현장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에 산입된다(대만 회사법 제177-1조).

또한 전자투표제도의 행사기한은 주주총회 2일전까지이며, 만약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주주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현장에서의 별도의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면서 동시에 주주총회 출석을 위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투표가 우선하며(대만 회사법 제177-2조), 주주가 전자투표를 한 이후 주주총회의 안건에 변경이 생긴다면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의결권은 기권으로 간주한다(대만 회사법 제177-1조).

2. 전자투표제도의 운영

대만에서 전자투표의 시스템은 '대만 예탁 및 청산공사(TDCC; Taiwan Deposito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y and Clearing Corp.)' 가 제공하고 있다. TDCC는 2009년 3월부터 정식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TDCC에 따르면 2012년에 133개의 회사가 강제적인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하게 되지만 한시적으로 이사선임과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는 여기서 제외시켜 실제 2012년도에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회사는 83개사이고 약 1200백만주에 해당하는 주식이 전자투표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대만은 강제적인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혼란의 방지를 위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이사선임과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에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차기 주주총회까지 의무적 도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대만에서 도입된 이사후보자 지명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 도모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전자투표제도와의 비교

2009년 5월 상법개정 시에 신설된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서는 새로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제368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만의 행사이므로 그 외에도 상법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완전한 형태의 전자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아직 운영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자투표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 evote)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년 9월부터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하였고 현재 유일한 전자투표관리기관이다. 주주는 'K-evote'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총 10일전부터 주주총회 직전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요 외국의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법제화의 마련에서부터 실제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다. 앞에서는 살펴본 바가 없으나 1993년 뉴질랜드에서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법안을 세계최초로 제정하였다.[93] 종래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개최방식과 병행하여 음성과 영상을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으로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델라웨어주 일반회

93) companies Act 1993 §124(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법과[94] 일본 회사법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주주총회의 개최를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발달에 따라 각국은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 많은 국가들에서도 전자투표제도를 비롯한 전자화 규정을 회사 관련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그 활용의 범위가 넓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2003년 9월부터, 중국은 2004년 12월부터, 덴마크는 2009년 4월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전자투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만이 2012년부터 일정요건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회사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도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현재 상장회사 중 약 45%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에서도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우리나라의 전자투표제도는 아직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이지만 그 활용도에 대한 기대감을 큰 반면에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아직 해결하여야 할 법률적 과제는 산재해 있는 형편이다.

한편,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개별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에 의무화를 요구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우리의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의무화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전자투표제도와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우리보다 먼저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 전자투표제도의 확산과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시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대만에서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우리 현행 상법의 태도는 대부분의 OECD국가와 동일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2009년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하여

94) DGCL §211a(2)b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비교법적 검토를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는 하나 이를 의무화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상법의 태도를 변경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 상반되도록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시킨다면 이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입법례의 하나가 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제1절 의무화 논의의 배경과 내용

Ⅰ. 논의배경

1. 섀도보팅의 폐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그 개인투자자들은 회사의 경영보다는 단기적인 투자이익에 더 관심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낮아 주주총회 성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9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을 실질주주가 아닌 회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예탁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에 정족수의 부족이 예상되면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예탁결제원이 대신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고,[96] 주주총회 회일의 7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예탁주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97]

상기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행사하는 의결권은 참석주식 수에 산정 될 뿐 참석주주들이 행사한 의결의 찬·반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98] 중립투표라고도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식의 교환과 이전(상법 제360조의3 내지 제360조의16), 합병(상법 제522조)과 분할(상법 제530조의3) 등 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

95)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제도"(2014), 140면.
96)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조 제5항 (통지 또는 공고 시 포함될 내용)
97)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예탁증권 등의 권리 행사)
98)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조 제1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라서 소유가 잘 분산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섀도보팅 제도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특히 감사선임 안건의 경우 각 주주는 소유주식의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건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 2016년 12월 결산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요청법인 642사 중 감사 등 선임의안 요청법인은 560사(87.2%)였고,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건수는 총 1,524건 중 감사 등 선임이 693건(45.5%)으로 가장 많았다.[99]

그러나 섀도보팅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자본적 기여를 하지 않은 예탁결제원이 의결권행사를 한다는 점에서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성립되지 못할 결의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의 중립투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요청만 하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주주총회를 무력화 시키는 등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 실제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섀도보팅 이용률이 높고,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되어 주주총회를 활성화 하는데 장애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100] 결과적으로 소수주주를 더욱 소외시키고 전체주주의 의사를 왜곡하는 풍조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폐단들 때문에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 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섀도보팅제도 없이 당장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업들의 대규모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말까지 제한적으로 그 시행을 유예하였다(자본시장법 부칙 제18조). 현재는 ㈀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상장법인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건에 대한 섀도보팅 요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액주주(1% 미만 주식) 보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101]

2.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난 2016년 4월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

99) 한국예탁결제원 1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현황” 「최근3개년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의안별 현황」 2017. 4. 26(2017. 10.24.방문).
100) 이해성, 「섀도우보팅(Shadow Voting)과 企業透明性에 關한 硏究 ; 利益의 質과 租稅回避를 中心으로」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0면.
101) 한국예탁결제원 “1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현황” (201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102]의 의장 제이미 앨런(Jamie Allen)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대주주가 10%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지분이나 순환 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지배구조의 문제와 소액주주 경시 풍조를 지적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열악한 기업지배구조를 꼬집었다. 한국은 1999년 아시아국가 중 가장 먼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도입했지만 그 이후 행보는 정체되어 있다. 실제 ACGA가 실시한 평가에서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1개국 중 8위였고, 111개 회원국 중 국제경제포럼의 ‘이사회 유효성’, ‘소수주주 이익보호’, ‘기업경영 윤리’ 평가가 각각 109위, 97위, 98위에 그쳤다.[103]

그로 인해 같은 해 11월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자본시장 발전 국제컨퍼런스에서 다양한 기업지배구조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2016 CGS-KDS 심포지엄에서 4번째 주제인 ‘한국기업지배구조의 현황 및 평가’를 발표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지배주주가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과 배당권(지배주주의 직접적인 보유 지분)의 괴리가 커질수록 지배주주의 기업에 통제는 강화되고, 반대로 지배주주만의 사적 이익 편취 등의 문제는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동 주제발표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참여 분리, 사적편익의 추구를 제한·축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04]

Ⅱ. 의무화의 효과

1. 주주총회 활성화

---

102) ACGA(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연기금과 아시아 상장기업, 다국적 은행 등 111개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103)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의하면 국가별 기업 지배구조평가에서 아시아 11개국 중 8위에 머물렀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보다 순위가 뒤쳐졌다. 기업별 단위 국가별 지배구조 총점도 43.6점으로 평균이하를 기록했다. 지배구조 점수가 제일 높은 호주의 경우 71점, 태국은 57.3점, 인도는 52.1점이다. (김민영, “알렌 ACGA 의장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국가 경쟁력’” 아시아경제 2016. 04. 18.보도)

104) 최성해, “[분석] 기업지배구조개선 새로운 길, 스튜어드십 코드·전자투표제도활성화… '코리아디스카운드 해소' 지름길”(글로벌이코노믹 2016.11. 21. 논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국예탁결제원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결산 주주총회 개최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들이 3월 24일과 31일(금요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5] 여기에는 결산기 이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이라는 제도적 제약도 작용하지만 주주총회가 신속, 원활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업계관행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06]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대한 규정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상법 제364조)에서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총회를 본점에서 개최하고 있고, 대다수의 본점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거주자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만약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두 세군데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참석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모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기업이 주주총회의 운영시 주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가 대부분의 회사에 도입되어 있다면 주주는 주주총회의 개최일과 개최장소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좀 더 관심 있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도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자투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주총회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 경쟁력의 확보

OECD는 회원국들에게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참석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있다.[107] 또한 전자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점점 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변화는 기업경영을 위한 회사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자투표의 시행은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환경에 발 맞추어 주주의 기업활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업경영의 IT

105) 한국예탁결제원, “3월 넷째주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총 현황” 참조.
106) 정성엽, “주주총회 형식화 문제 해소 방안 제언-Governance Issue Report” 「대신경제연구소」(2016), 3면.
107)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999. p.2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화, 주주중시의 경영 등 잠재적인 주주를 포함한 해외투자자들에게 기업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108]

3. 의사정족수의 확보와 회사의 비용절감

전자투표제도가 의무화되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도입하여 활용하게 초기서부터 그 인프라 형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의 간소화는 물론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비용은 2008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각 상장회사당 평균 1,729만원 정도가 소모되고, 상장회사 전체로 보면 연간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교통비, 기회비용 등) 등도 연간 49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109]

Ⅳ.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검토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는 구현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일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방치되어 온 전자투표제도를 그 제도취지에 맞는 정상궤도로 올려놓고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10] 그러나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는 전자투표제도 자체의 문제점 이외에 의무화 또는 강제화라는 수단으로 인하여 별도의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의 목표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강제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구현방식이 직접적인 방식인지 간접적인 방식인지에 상관없

108) 이윤석, “주주총회 전자투표 제도에 관한 연구” 「法과 政策(제19집 제1호)」(2013), 301 내지 302면.
109) 허항진, “개정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제38집)」(2010), 301면.
110) 법무부, 전게 공청회 자료집, 61면 각주 1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전자투표제도가 강제화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1. 반(反) 기업민주주의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는 기업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는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강제성이라는 규제수단이 기업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가 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하여 주주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회사에 보호되어야 할 자율성과 이에 기초한 회사운영의 민주화는 무시되어 버린다. 최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탈규제방식의 흐름 속에서 규제의 강화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위 경제민주화의 목적과 내용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비록 전자투표제도를 강제화 시키는 것이 소액주주의 보호와 주주총회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함이라도 그 보호범위가 모든 주주가 아닌 일부 주주의 보호에 편향된 문제해결 방식이라는 비난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111] 그러나 그동안 주주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치한 데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라도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 부담이라는 것이 경영에 치명적인 사항이거나 기업의 본질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자투표의 도입은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주총회의 형식화 문제해결 부족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는 주주총회 형식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주장되고 있지만 그것이 주주총회의 형식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는 못할 것이다. 주주총회가 유명무실화된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주주총회 개최형태에서 원인을 찾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주주들의 주주총회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하겠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주주총회 승인 후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과 감사, 주총 소집절차 등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고

111) 김병태, 앞의 논문, 99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면 물리적으로도 주주총회가 3월 중·하순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112] 이유가 무엇이건 많은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정일에 같이 개최되는 주주총회 어느 한 곳에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113] 즉, 소액주주들은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의결권의 행사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오히려 자신의 이익실현을 주식매매차익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결권 행사에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연해있는 주주들의 단기적인 투자패턴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렵고, 되려 이것은 주주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는 형상을 띄게 되어 주주민주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주주의 증권시장에의 유입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모순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 상법은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을 주주에게 행사의 압박을 주려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차별받는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고 있으며, 실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기 전 터키 내 주주총회 현장 참석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지만 전자투표제도의 활용 이후 약 2.6배로 올라간 34%의 참석률을 기록했다.[114]

주주총회의 형식화에 대하여 전자투표제도 자체의 의무화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를 마련하여 주주 총회일을 분산시킨다거나 의결권에 대한 주주의 교육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주주총회에의 참여가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참여와 의결권의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공적기능의 일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115]

---

112) 송민경, “주총 내실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주총 개최일 분산 및 주주의 정보 접근 제한 완화”「CGS Report(제3권 10호 통권 제33호)」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2면.
113) 김병태, 앞의 논문, 102면.
114) 법무법인 세움 블로그, “상법개정안 - 전자투표제 의무화 살펴보기” (2017. 2. 24.).
115) 김병태, 앞의 논문, 102 내지 103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주주총회 의결의 질적저하 초래

강제화 된 전자투표제도를 통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율이 다소 높아진다면 주총결의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지만 만약 안건에 관심이 없는 주주의 무책임한 의결권의 행사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의결권의 행사는 단순히 양적으로는 투표율의 상승을 보여주지만, 주주가 행사하는 의결권의 질은 이전에 비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강제화 된 전자투표제도하에서 높아진 투표율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전자투표제도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율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회사경영에 대한 주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때문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온라인상 질의응답과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전자투표의 속성상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회사경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 비율을 낮추게 되어 오히려 주주총회 의결의 정당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강제화 된 전자주주총회에서는 무책임한 의결권의 행사나 온라인상 총회꾼의 개입으로 인하여 변질된 의결권의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형식적으로 문제없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보이겠지만, 그 내용은 질적으로 저하된 주주총회 결의가 될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116]

4. 주주의 의결권행사 제약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는 전자화의 한계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킹 등 전자통신에 내재하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변질되거나 제약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입법적으로 철저하게 마련해 둔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완전한 해소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적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자칫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모든 주주가 전자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와 관련 교육의 제공이 충분하게 이루어

116) 김병태, 위의 논문, 10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는 오히려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이와 상관없이 컴맹이나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전자화를 손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배제시키게 된다. 이 경우 비록 현장주주총회가 여전히 유효하여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부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형태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약되어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 기업의 경제적 비용과 시간의 이중 부담

현행 상법상 현장주주총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므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은 의외로 시간과 비용의 이중부담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전자투표제도가 의무화되면 회사는 현장주주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면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 역시 고스란히 기업에게 귀결될 것이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위임할 경우 그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기능은 정작 전자투표제도의 의무적인 도입에서는 적절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그 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117]

제2절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구현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자투표제도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 4). 즉, 현행 상법상 주주는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이 행사를 도입하여야만 전자투표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입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기초로 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또는 강제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그 가능한 방법을

117) 김병태, 위의 논문, 106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Ⅰ. 모든 회사에 대하여 의무규정을 두는 방법

현행 상법 제 368조의 4 자체를 직접으로 개정하여 '모든회사' 에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현장주주총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하에서는 상장, 비상장의 구분 없이 상법상 모든 회사는 현장주주총회와 함께 반드시 전자투표를 채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는 현장주주총회를 유지하면서 모든 주주가 전자투표를 행사 할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이때 만일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면 법률규정 위반이 되어 주총결의하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회사가 현장주주총회의 운영 없이 전자투표에 의한 주총결의만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의결권의 전자화를 넘어선 완전한 의미의 전자주주총회로서 현재 상법 규정상 주주총회의 무효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모든 주식회사는 전자투표를 포함하여 기존의 현장주주총회를 운영해야 하는 방식을 유지하게 해야한다.

그러나 회사의 개별사정을 무시한 일률적인 의무화 방식은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은 실현될지 몰라도 모든 회사가 수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예컨대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지배주주가 과반이상 이거나 기타 전자투표의 필요성이 없는 회사 등의 경우는 무리하게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없으므로, 상법상 '모든회사' 에게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시키는 이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118]

Ⅱ. 일정한 회사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방법

이는 상법 제368조의4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회사' 에 대해서만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법이다. 한편

118) 김병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와 문제점" 「기업법연구(제27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2013) 93내지 9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는 현재의 상법규정대로 전자투표제도가 이사회 결의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상법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제542조의2 이하) 부분에 상장회사 등과 같이 일정한 회사에는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상장회사특례 규정'을 두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주주총회와 함께 전자투표제도를 병존시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현장주주총회와 전자투표제도를 회사의 자율에 의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비상장회사는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을 여전히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상장회사는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방법이다.

정호준의원이 2013년에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모든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의의무화를 도모하고 있다.[119] 또한 최근 법무부 주도의 상법개정안 역시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두어 상장회사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는 개정시안을 제안하고 있고,[120] 다만 제도시행의 추이를 지켜보며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대상회사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121] 따라서 정호준의원의 상법개정안은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법무부 상법개정안은 일정한 주주의 수를 기준으로 예컨대, 5,000명 내지 10,000명의 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수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하여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상호 비교되지만 모두 직접적으로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내용을 상법상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안의 기준이 되는 주주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예컨대, 주주 1,000명 이상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

119)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제532조의5(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모든 상장회사는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690(2013. 2. 12)>.

120) 법무부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368조의4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일정한 주주수를 갖고 있는 제한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법무부, "「상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13-162호(2013. 7. 17)>.

121) 천경훈,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2013. 6. 14) 5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도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22] 대다수 기업들이 특정일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액주주의 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에 최소한 주주 1,000명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주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23]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주주의 수가 많고, 외국인 주주가 많기 때문에 상장회사에만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 있어 보인다. 또한 상장회사의 대상범위에 대하여 주주의 수, 자본금, 자산총액 등과 같이 여러 기준이 있지만 기업투명성에 있어 회사의 규모보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외국인보유 지분율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았을 때[124] 그 대상범위를 주주의 수로 기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주주의 전자투표청구권 인정

이는 현행 상법 제368조의4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로 주주에게 전자투표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의 취지가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다면 그 의결권의 사용방식의 선택권을 주주에게 부여해 주자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그대로 회사는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으며, 단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주주로부터 사전에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전자투표 행사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주주의 전자투표 의결권을 인정해주게 된다. 이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민주적인 방법이고 주주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보호로 받기 때문에 가장 법적 논란이 적은 의무화 방법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회사의 주주총회 업무가 대단히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현행 상법상 주주가 전자투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의결권 보호 원칙에 따라 전자투표제도가 아닌 현장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전자투표청

---

122) 매일경제신문, “주주 1000명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돼야”(2012. 6. 12); 머니투데이, “법무부, 상장사 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추진”(2012. 6. 12 보도기사).

123) 대만의 경우 2012년부터 자본액 100억 대만달러(약 3700억원), 주주 1만명 이상의 상장기업은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대만 회사법 제177-1조 및 내일신문, “주총 활성화하려면 전자투표 의무화해야”(2013. 5. 1)>.

124) 이해성, “섀도우보팅(Shadow Voting)과 企業透明性에 關한 硏究 ; 利益의 質과 租稅回避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10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권을 인정해주었을 때 전자투표를 요청한 주주가 이를 무시하고 현장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고 이는 전자투표제도가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할 소지가 있게 된다.[125]

Ⅳ. 간접적 의무화 구현 방법

이는 상법 제368조의4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자투표제도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화 하여 의무화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직접적인 방법을 통한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는 많은 부작용과 거부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율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을 강제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구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섀도보팅 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이러한 선상에서의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즉, 섀도보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과 함께 섀도보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였고 종국적으로 섀도보팅의 전면 폐지를 위한 방안이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추진되었으며,[126] 마침내 그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2013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하였다.[127]

2017년부터 섀도보팅이 전면 폐지되면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충족을 섀도보팅에 의존하던 기존 상장회사들은 별도의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대체수단으로 예컨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의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 한계로 인해 결국 의결정족수의 확보가 좀 더 손쉬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되거나 아니면 의무화 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 의무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2010년 11월에 시행된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 항목에 전자투표를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를 도입한 회사에게는 일정한 점수(3점)

---

125) 김병태, 앞의 논문, 95~96면.

126) 자본시장법 제314조 제5항 제6호 신설(조문환 의원 등 17인 의원입법 발의, 2010. 6. 23)하여 국회 상임위(정무위원회) 상정(2010. 11). 자본시장법 제314조 제4항, 제5항 폐지안이 국무회의 통과(2011. 11. 22).

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4747 (2013. 4. 30);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공지사항(2013. 4. 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주는 방식이다.[128] 이 정책 또한 결국 간접적으로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을 장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의무요건으로 전자투표제도의 반영을 고려하는 내용 역시 간접적인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일된 규격의 증권용지 사용의무,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무 등과 같이 회사에 대한 상장요건 중 하나로 전자투표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적어도 상장회사에는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있을 수 있도록 간접적인 강제화를 도모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29]

물론 이러한 방식들이 과연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을 강제하는 것인지 회사자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을 찾지 못하였거나 회사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본다면 이는 결국 타율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주주와의 상호 의견교환 및 토론의 생략, 주주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해킹 등 기술적 하자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 여전히 전자투표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기업간의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한다면[130] 무조건적으로 강제되도록 하는 간접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은 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한 정족수의 확보와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주주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주주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

128)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업무 안내」(2011. 2. 11) 참조.
129) 김순석, “주주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과제”전자투표제도 활성방안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2009), 33면; 정승화,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기업법연구(제26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2), 149면.
130)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법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2006. 7. 6. 자료집), 67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기업들의 전자투표제도 이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의 공정성 및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Ⅰ. 전자투표제도의 행사요건

회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9조의4 제1항). 이때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① 전자투표제도 채택에 관하여 이사회의 포괄적 결의가 허용되는가 하는 점과 ② 이사회 결의 대신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 문제된다.[131]

1. 이사회의 포괄적 결의

전자투표제도의 이용은 매 주주총회 마다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선택해야 하므로, 별다른 결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불가능 할 것이다.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역시 이사회에 있으므로(상법 제362조) 보통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동시에 전자투표제도의 이용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것이다. 물론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전자투표에 대한 결의를 별도로 할 수 있으나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전자투표의 실시에 대하여 공지해야 하므로(상법 제368조의4 제2항), 실제로는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주주총회는 매회 그 목적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하지만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행사방법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 채택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매번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실무상으로도 이사회가 같은 결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포괄적 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효력도 인정하고 있다.[132]

131) 정경영, 앞의 전자투표제도의 시행 "전자투표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증권예탁」(2010), 14~16면.
13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해 이사회가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은 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이사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결의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포괄적 승인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이 주주나 회사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주주총회 활성화라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취지와 주주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지속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기로 하였더라도 전자투표관리기관과의 계약으로 수수료를 지급[133]하는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더 이상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전자투표제도 채택에 관한 이사회의 포괄적 결의는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 수권에 따라 전자투표제도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기로 한 경우라도 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마다 전자투표제도의 실시에 대해 명시해야 할 것이다.

2. 정관의 규정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전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서 주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충돌할 우려가 큰 것은 정관으로, 그렇지 않은 것 중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고 회사의 정책적 판단만이 문제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다수주주의 의사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입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도입된 것은 각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쉽게 활용하기를 기대하는 입법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전자투표의 채택을 이사회결의 대신 전자투표제도의 실시 규정을 정관에 둔다면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정관의 기능과 효력 및 이사회결의와의 관계도 관련되는데, 정관이 회사의 근본규범이며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관의 기재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본다.

지만 계속 반복되는 동종동형의 정형적 거래일 경우 거래의 종류, 금액, 기간 등을 정해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본다. 정경영,「(개정판)상법학강의」 (2009), 524면.

133) 전자투표수수료는 회사의 자본금과 주주 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별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자투표의 채택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운영절차의 실무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정관에 두더라도 주주의 권리나 이사회의 의사결정권에 중대한 침해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이상 이사회의 결의로는 철회할 수 없으며,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게 되므로 정관에 전자투표제도 불채택권한을 이사회에 유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134]

3. 주주와 회사의 동의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상법 제363조 제1항) 같이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전자문서에 익숙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전자문서에 의한 무분별한 소집통지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을 다양화 하여 주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전자투표의 실시여부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는 그 결의가 있기 전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식을 결정하더라도 주주는 의결권의 행사방식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개별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135]

주주가 전자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회사에 사전승낙을 얻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할 경우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368조의4 제3항) 특별히 회사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136]

생각건대,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

---

134) 이세영, “株主總會의 電子化에 관한 法的 硏究”「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134면.

135) 박상근, “인터넷시대의 회사법을 위한 일시론”, 「법학(제43권 제1호)」 (2002), 84면.

136) 정경영, “전자투표의 시행과 기업의 준비과제”「상장협연구(제57권)」(2008), 166면; 허항진, “개정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법학연구(제38집)」한국법학회 (2010), 31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대한 주주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결권행사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전자투표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전자투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 행사운영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전자투표관리기관은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소집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137]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반드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상법 제368조의4 제2항 참조)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은 전자적 방법으로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68조의4 제3항)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소집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로부터 요청이 있게 되면 이러한 자료의 제공을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Ⅱ. 주주의 본인확인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경우 주주 확인절차를 포함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8조의4 제3항 및 제6항). 이에 따라 상법시행령은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즉, ①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②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③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④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이다

137) 최완진,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를 중심으로" 「경영법률(제16집 제2호)」(2006), 321면. 참고로 일본 회사법 제302조 제4항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승낙하지 않은 주주로부터 총회 1주일 전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의 제공을 전자적 방법에 의할 것을 청구받은 때에는 의결권행사서를 해당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동조 제2호).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동조 제1호). "전자서명생성 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동조 제4호). 또한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동조 제7호).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동조 제8호).

주주확인 및 전자투표를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자투표의 보안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38] 주주확인 절차는 기술적이고 변화가 빠른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139] 그러나 전자투표제도가 발달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법 규정에서 주주확인의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적 의결권 행사 대행기관인 Broadridge사[140]는 ID와 통제번호(Control Number)를 통해 주주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141]

Ⅲ. 의결권의 철회 및 변경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제368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

138)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상사법연구(제28권 제3호)」(2009) 393면; 정쾌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제21권 제3호)」(2002), 337면.

139)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156면; 홍복기,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상사법연구(제22권 제3호)」(2003), 211면.

140) 정식명칭은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 Inc.으로 2007년도 Automatic Data Processing(ADP)에서 분리, 독립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미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된 사업분야는 전자위임장투표(electronic proxy voting이다.

141)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企業法硏究(제28권 제4호 통권 59호)」 219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제368조의4 제4항). 이에 따라 회사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양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주는 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모두 허용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결권행사의 수정이나 철회의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자를 모두 허용하였을 때 최종적인 의결권 행사로 인정하는 방식을 미리 정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42] 그러나 서면투표제도는 사문화 되어 사실상 기업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의결권의 행사방식을 선택한다면 전자투표 방식만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의 행사를 한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대하여 철회,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주주총회 전날까지는 이러한 사후적인 의결권행사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법시행령은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 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 조항을 의결권 행사기간 내의 철회나 변경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143] 전자투표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도 전자투표권자는 전자투표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같은 입장이다(동규정 제13조 제3항).

그러나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서면투표를 선택한 주주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전자투표를 선택한 주주에게만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서 이처럼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고 보인다. 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 대부분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발행회사의 홈페이지를 활용하게 된다. 주주총회 개최 전에는 전자투표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투표만을 채택한 회사는 최종투표결과를 가지고 당해 주주에 의한 의결권행사로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주주는 의결권 행사기간(회일 전일)까지 전자투표의 철회·변경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144] 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주주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

142)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159내지160면.
14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II」 법문사 (2013), 226면(김병태 집필부분); 허항진, "개정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법학연구(제38집)」(2010), 314면.
144) 곽관훈,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IT와 법연구(제7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2013), 152면;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397면; 정준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편의성 제고와 그 문제점",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는 것이므로, 총회 출석을 통한 철회나 변경이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면투표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투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45]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참석하지 못한 주주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제도인데,[146] 발행회사의 정족수 충족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어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의결권 행사의 철회나 또는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147]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148]

Ⅳ. 수정동의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따라서 만일 주주총회 당일 현장에서 수정동의가 제출될 경우, 수정안의 표결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회사로서는 의안 수정 시, 전자투표로 행하여진 의결권의 수를 정족수에서 제외하면 의안의 가결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수정동의 문제는 서면투표와 동일하게 발생하며, 그 효력에 대한 학설로는 결석설, 제도적 기권설, 기권설, 절충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149] 우선 결석설은 전자투표한 의결권의 수를 수정안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 견해이다. 제도적 기권설은 원안에 찬성한 의결권은 수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보고, 원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결권은 수정안에 기권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150] 기권설은 원안에 대한 찬·반에 상관없이 이미 행사된 전자투표를 수정안

2010), 36면.

145) 정준우, 앞의논문, 36면. 서면투표를 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는 견해는 이철송,「회사법강의(제22판)」 박영사(2014) 549면; 上柳克郎·鴻常夫·竹內昭夫 編,「新版注釋會社法(5)」有斐閣 (1987), 201面.

146) 김재범, “2009년 개정상법(회사편)의 문제점” 「법학논고(제33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0), 111면.

147) 정찬형, “주식회사법 개정제안”「선진상사법률(제49호)」(2010), 41면.

148) 송옥렬, 「상법강의(제4판)」홍문사, 914면.

149) 각 학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환성화 방안” 「企業法硏究(제28권 제4호)」157 내지 158면 참조.

150) 안동섭,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비교사법」 창간호(1995), 237 내지 238면; 우홍구,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사법행정」 1990년 5월호, 21면; 西尾信一, “書面投票の實務的背景”, 「(上柳克郎先生還曆記念)商事法の解釋と展望」 有斐閣 (1984), 107面.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대해서는 모두 기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견해이다.[151] 한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전자투표자의 의결권은 섀도보팅처럼 현장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자는 견해도 제기된다.[152]

생각건대 주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153] 따라서 주주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전자적 기록에 주주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원안에 찬성한다' 또는 '어떠한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원안에 반대한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그 결의에 대해서는 기권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154]

Ⅴ. 의결권 행사기한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 단계에서의 전자투표제도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투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서면투표와 같은 구조이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한다(상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2호)는 규정에 따라 주주는 총회 회일의 전날까지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전자투표는 주주의 온라인상 조작이 거의 실시간으로 회사에 전달 가능하므로 '총회 회일 전일'까지라고 하면 회사는 전일의 24시까지 의결권의 행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주주로서는 IT화로 인한 장점이지만 회사에게는 철야작업을 강요하게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 예컨대, 투표의 행사를 오후 5시까

151)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권자 이용약관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권기범,「현대회사법론」삼지원(2001), 566면; 권재열,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상사법연구(제19권 제1호)」(2000), 267면; 김병연,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와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제7집 제1권)」(2000), 640 내지 641면; 정쾌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제21권 제3호)」 335면; 森本 滋, "書面投票の制度的意義と機能" 「(上柳克郎先生還暦記念)商事法の解釋と展望」有斐閣(1984), 128~129面; 山田尙武, "會社運營の電子化 - 株主總會の電子化を中心に -" 「ジュリスト(No. 1206)」(2001), 90面.

152) 정경영, "전자투표제도의 시행과 기업의 준비과제 -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상장협연구(제57호)」(2008), 174면; 이형규,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경영법률(제16집 제1호)」(2005), 233면.

153) 김재범, "서면투표제도를 이용한 주주총회의 운영" 「경영법률(제12집)」(2001), 193 내지 194면.

154) 정완용, 앞의논문, 396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 호소하는 회사도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행사기한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결권 행사기한에 대해서는 총회 전일의 영업시간 이내로 하자는 견해, 총회 전일의 24시까지로 하자는 견해,[155] 총회 개회 직전까지로 하자는 견해,[156] 총회 개회 후 의결 전까지로 하자는 견해[157] 등 다양하다. 또한 전자투표의 마감시한은 의결권의 철회문제와도 연관된다.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다시 표결에 참석한다면 전자투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주주총회장에 입장할 때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투표의 마감은 최소한 총회 개회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투표제도의 마감시한은 전자투표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IT기술의 발전과 향후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총회 전일의 영업시간까지로 마감시한을 정하고,[158] IT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투표의 집계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5년 일본 회사법의 경우도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총회 전일의 영업시간까지를 마감 시한으로 하고 있다(일본회사법 제3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70조).[159]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투표관리기관인 Broadridge사의 의결권행사 사이트인 ProxyVote.com[160]은 주주총회 개최 전일 23시 59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161]

Ⅵ. 전자시스템 결함의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

전자투표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의결권 행사 데이터가 해킹 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소실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다.

---

155) 양만식,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위임장권유 -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제38권 제1호)」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69면.
156) 홍복기, 앞의논문, 30면.
157) 山田尙武, 林 勇, “株主總會運營の電子化·彈力化と株主總會制度のゆくえ”, 「(酒卷俊雄先生古稀記念)21世紀の企業法制」 商事法務 (2003), 394면.
158) 전자투표기간은 주주총회 회일 10일전 오전 0시부터 회일 전날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있다(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4조 제1항).
159) 김순석, 앞의책, 160~161면.
160) <http://east-online.proxyvote.com>.
161) 허항진, 앞의논문, 32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전자시스템의 결함에 의해 주주가 전자투표를 할 수 없게 한 원인이 주주가 계약 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가 다운되거나 통신회선의 장애로 인한 때에는,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면책되고 따라서 총회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162] 반면에 회사가 전자시스템의 정비, 보수를 해태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의결권의 다소(多少)에 따라 구별될 것이다. 만일 당해 전자투표의 수가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이 낮고 또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결의방법의 하자이지만 재량기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수에 해당한다면 결의취소(정도에 따라서는 결의부존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163]

둘째,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자투표의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이 정족수 등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대량의 데이터라면,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결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손상된 전자투표에 관한 기록 없이도 주주총회의 정족수나 결의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회사가 시스템상 해킹,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한 결의의 효력에 하자는 없다고 본다.68)

셋째,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의 부실 등의 원인으로 서버가 다운되어 주주가 전자투표를 할 수 없었거나, 보안시스템 등의 결함으로 전자투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들로 전자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자투표의 결과가 소실되는 등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164]

---

162) 홍복기, 앞의논문, 215면; 林 勇, 前揭論文, 626面; 株主總會のIT化研究會, “株主總會のIT化の實務と問題點(下)” 商事法務 第1600号 (2001) 22面.

163) 山田尙武, 前揭論文, 90面.

164) 정완용, 앞의논문, 401면; 고재종, “가상공간상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236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장 결 론

기업은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며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주주들의 손쉬운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현장주주총회가 없는 완전한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를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입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IT기술의 발달이나 보급에 비하면 주주총회의 IT화는 느린 편이었는데, 이는 그동안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법적·제도적 정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2010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도모하였으며,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은 주주총회가 전자화되어 가는 단계에서 소집통지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전자주주총회로의 발전을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라고 본다.[165]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에게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여 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하여 주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회사에게는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주주총회 운영비용을 절감시키며 회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입법적 미비와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으며, 의무화 방식으로는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과 유인책 등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하자는 의견이 존재한다. 만약 직접적인 방식으로 강제할 하게 된다면 그 강제되는 대상을 모든 회사로 할 것인지, 상장회사 중에서도 회사의 규모나 주주의 수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전자투표제도가 주주들의 참여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많은 주주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기업에게 그 필요성이 더 크다.[166] 따라서 자산규모보다는 주주수를 기준으로 전자투표제도 도입대상 회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의 전자화에 따른 상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165) 정완용,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국회금융정책연구회 ‘전자투표제도 활성화 방안’」(2009. 7. 22), 28면〔동지〕.
166) 곽관훈,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IT와 法연구 제7집」(2013) 16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결권의 철회 및 변경이나 의결권의 행사기한 등과 같이 주주간의 평등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나 총회의 결의자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보다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투표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전자투표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투표관리업무의 관리를 도맡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의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167]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대부분 경영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의결권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므로 회사나 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갖지 않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두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의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전자투표의 운영을 위한 전자투표관리기관에의 위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전자투표관리기관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리기관에 대한 자격, 구성, 운영, 의무 등에 관한 입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들이 있음에도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상법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의 현황에 효과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기업의 주주참여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다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주주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회사의 경영에 반영하고,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적절하게 견제·감독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 하여 소수주주들의 주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67) 정완용, “바람직한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방안”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2004), 222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논문〕

고윤성, 「가족지배기업의 경영성과 및 투자성과」한국경제연구원 (2016)

고재종, "가상공간상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검토"「상사법연구(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삼지원 (2001)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하여"「비교사법(제11권 제4호)」(2004)

권종호, " 주주총회의 IT화"「증권예탁(제41호)」(2002)

권재열,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상사법연구(제19권 제1호)」(2000)

곽관훈,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IT와 法연구(제7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3)

김순석, 「전자주주총회」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주주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과제"「국회금융정책연구회 '전자투표제도 활성화 방안'」(2009. 7. 22.)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企業法硏究(제28권 제4호 통권 59호)」

김재범, "서면투표제도를 이용한 주주총회의 운영"「경영법률(제12집)」(2001)

"2009년 개정상법(회사편)의 문제점" 「법학논고(제33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0)

김병연, "상법상 서면투표제도와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제7집 제1권)」(2000)

김병태,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영산법률논총(제10권 제2호 통권 제18호)」(2013)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문제점",「기업법연구(제27권 제3호)」(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경서, “기업지배구조 연구의 고찰과 향후 국내관련 연구의 방향” 「경영학연구(제46권 제3호)」(2017)

박상근, “인터넷시대의 회사법을 위한 일시론” 「법학(제43권 제1호)」(2002)

박석희, “경영평가가 공기업 조직역량에 미친 효과분석”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박철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의결권 행사제도” 「한국상사법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 (2010)

송옥렬, 「상법강의(제4판)」홍문사

신현윤.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商事判例硏究(제30집 제3권)」 (2017)

안동섭,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비교사법(창간호)」(1995)

양만식,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위임장권유 -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제38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우홍구,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사법행정(5월호)」(1990년)

이세영, “株主總會의 電子化에 관한 法的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이윤석, “주주총회 전자투표 제도에 관한 연구” 「法과 政策(제19집 제1호)」제주대학교 (2013)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2판)」 박영사 (2014)

이혁, “새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 「상사법연구(제30집 제3권)」 (2017)

이형규,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경영법률(제16집 제1호)」(2005)

이해성, “섀도우보팅(Shadow Voting)과 企業透明性에 關한 硏究; 利益의 質과 租稅回避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제16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5)

장영수,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연구” 「증권법연구(제15권 제1호)」(2014)

정경영 · 이세영,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후 주주총회의 변화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제23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제12권 제4호)」 한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비교사법학회 (2005)
「상법학강의(개정판)」박영사 (2009)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2004)
“전자투표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증권예탁」(2010)
“전자투표제도의 시행과 기업의 준비과제 -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장협연구(제57호)」(2008)
정완용, “바람직한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2004)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국회금융정책연구회 ‘전자투표제도 활성화 방안’」(2009. 7. 22)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제28권 제3호)」(2009)
정성엽, “주주총회 형식화 문제 해소 방안 제언-Governance Issue Report”「대신경제연구소」(2016)
정승화,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제26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2)
정준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편의성 제고와 그 문제점”「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정찬형,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2004)
정찬형, “주식회사법 개정제안”「선진상사법률(제49호)」(2010)
정쾌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상사법연구(제21권 제3호)」(2002)
최완진, “주주총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자화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77호)」(2017)
최완진,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를 중심으로”「경영법률(제16집 제2호) (2006)
최준선, “섀도우보팅제 폐지가 상장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회사법(제5판)」삼영사 (2010)
천경훈,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3)
허원준, “주주총회 전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6)
허항진, “개정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법학연구(제38집)」 한국법학회 (2010)
홍복기,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제22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단행본 및 기타자료〕
김민영,“알렌 ACGA 의장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국가 경쟁력’”, 아시아 경제, 2016. 04. 18. 보도
내일신문, “주총 활성화하려면 전자투표 의무화해야”2013. 5. 1. 보도
머니투데이, “법무부, 상장사 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추진.”2012. 6. 12. 보도
매일경제신문, “주주 1000명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돼야”2012. 6. 12. 보도
법무법인 세움 블로그, “상법개정안 - 전자투표제 의무화 살펴보기”(2017)
법무부, “「상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13-162호 (2013)
김민영,“알렌 ACGA 의장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국가 경쟁력’”, 아시아 경제, 2016. 04. 18. 보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법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 자료집(2006)
최성해, “[분석] 기업지배구조개선 새로운 길, 스튜어드십 코드·전자투표제도활성화… '코리아디스카운드 해소' 지름길”, 글로벌 이코노믹, 2016. 11. 21. 보도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도 전자투표미룬 이유는?”, “전자투표 공기업마저 외면...수십억 낭비”, 2011. 3. 20. 보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정관 기재유형” 「상장」 (2010)
「2016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201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II」, 법문사, 2013(김병태 집필부분)
한국예탁결제원,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정기주주 총회 현황분석”(2017)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2016)
“1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섀도보팅 현황”
“ 3월 넷째주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총 현황”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업무 안내」(2011)

2. 외국문헌

DanielAdam Birnhak, "OnlineShareholderMeetings", 29RutgersComputer&Tech.L.J. 423,(2003), p.439~440.
Douglas R. Cole, “E-Proxies for Sale? Corporate Vote-Buying in the Internet Age” ,76 Wash. L. Rev.79, (2001), p.3.
小坂重吉, “株主總會運營の今日的課題-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との關聯において-” 「改正會社法の基本問題」 商事法務 (2003)
山田尙武, “會社運營の電子化” 「ジュリスト(第1206号)」(2001)
“株主總會運營の電子化·彈力化と株主總會制度のゆくえ”「(酒卷俊雄先生古稀記念)21世紀の企業法制」 商事法務 (2003)
鮎瀨典夫, “株主總會をめぐるこれまでの論議と電子株主總會”「電子株主總會の研究」 弘文堂 (2003)
岩村充・神田秀樹 編,「電子株主総会の研究」弘文堂 (2003)
池田順一, “アメリカにおける株主總會の電子化について” 「電子株主總會の研究」 弘文當 (2003)
中西敏和, “株主總會のIT化と實務の對應” 「商事法務(第1635号)」(2002)
上柳克郎·鴻常夫·竹內昭夫 編, 「新版注釋會社法(5)」 有斐閣 (1987)
西尾信一, “書面投票の實務的背景”「(上柳克郎先生還曆記念)商事法の解釋と展望」 有斐閣 (1984)
森本 滋, “書面投票の制度的意義と機能”「(上柳克郎先生還曆記念)商事法の解釋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展望」有斐閣（1984）
[株主總會のIT化]研究會，“株主總會のIT化の實務と問題點(下)”「商事法務(第1600号)」(2001)

Collection @ chosun